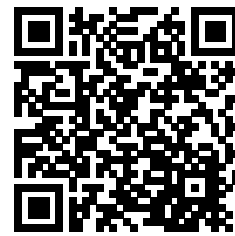
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-수행기관 표준 협약서



■ 제1조 ()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'관리기관'이라 한다)과 아래 '수행기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[수행기관]

수행기관 : (주)월시스

사업자등록번호 : 3148148940

주소 : (34145)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20(노은동) 2층

■ 제2조 (제1조(목적))

본 협약은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■ 제3조 (제2조(적용 규정))

본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', '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 등 관계법령과 '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'(이하 '관리지침'이라 한다) 및 당해 연도 '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·수행기관 모집공고'의 내용이 적용된다.

■ 제4조 (제3조(수출지원서비스의 내용))

① 본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제공할 수출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수행 서비스카테고리]

통번역>통번역(일반)

② 수행기관은 수출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출지원서비스를 수임한 후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③ 수행기관은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대가를 관리지침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바우처로 정산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한다.

■ 제5조 (제4조(협약기간))

①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2024.07.01 ~ 2026.06.30까지로 한다.

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협약기간 동안 제3조에서 정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참여기업에게 제공한다.

③ 본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,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갱신되지 않는다.

■ 제6조 (제5조(수행기관의 의무))

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
2. 정산가이드의 숙지와 준수
3. 공정하고 투명한 바우처 정산 및 회계 처리
4.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
5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관리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
6. 사업 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관리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
7. 기타 수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 운영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

■ 제7조 (제6조(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))

①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게 관리지침에서 정한 제재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관리지침에서 협약해지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수행기관에 대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
3.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4. 수행기관이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
5. 수행기관이 수출지원서비스 제공을 포기할 의사를 밝힌 경우
6. 수행기관이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7. 기타 수행기관이 정상적인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출지원서비스를 수입할 수 없다.

■ 제8조 (제7조(비밀유지의무))

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및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참여기업의 업무 내용이나 이와 관련되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이행 및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■ 제9조 (제8조(신의성실의무))

수행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본 협약 및 수출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■ 제10조 (제9조(정보공개 의무))

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 구매 결정시 필요한 수행기관의 정보(업력, 종업원수, 매출액, 기업신용평가등급, 서비스가격,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등)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■ 제11조 (제10조(관리지침의 적용))

① 관리기관의 수행기관 관리,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사이의 수출지원서비스계약의 해지, 바우처 정산,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, 수행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.

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관한 관리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2조에서 정한 적용 규정의 내용과 정산가이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.

③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에 대해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■ 제12조 (제11조(기타))

①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선정 및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해당 서류의 기재 사항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본 협약기간 중이라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.

③ 수행기관은 역량에 따라 2개 이상의 서비스분야의 수출지원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나,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대 3개 서비스분야까지만 수출지원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의 '특수관계기업 여부 등 확인서'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총괄수행기관이 담당하는 서비스분야의 경우 수행기관은 총괄수행기관의 검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총괄수행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정산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3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(수행기관) 대표 김윤희 협약일 2024.06.07

(관리기관)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약일 2024.06.11

(관리기관) 대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약일 2024.06.10